

2023년 귀속 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 제출 안내

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,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(“외국법인 연락사무소”)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「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법인세법 §94의2, 동법 시행령 §133의2)

<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>

□ 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 제출 대상

-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,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“사무소”(법인세법 §94의2 및 외국환거래규정 9-32)
 - * 비거주자(외국법인)가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(외국환거래규정 9-33) 및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 발급(법인령 §154)

□ 제출 기한

- 제출대상기간(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)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
 - ※ 올해는 2023.1월1일 ~ 12월31일까지의 현황자료를 2024년 2월13일까지 신고

□ 제출 내용

- 연락사무소의 기본사항,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 및 국내투자 현황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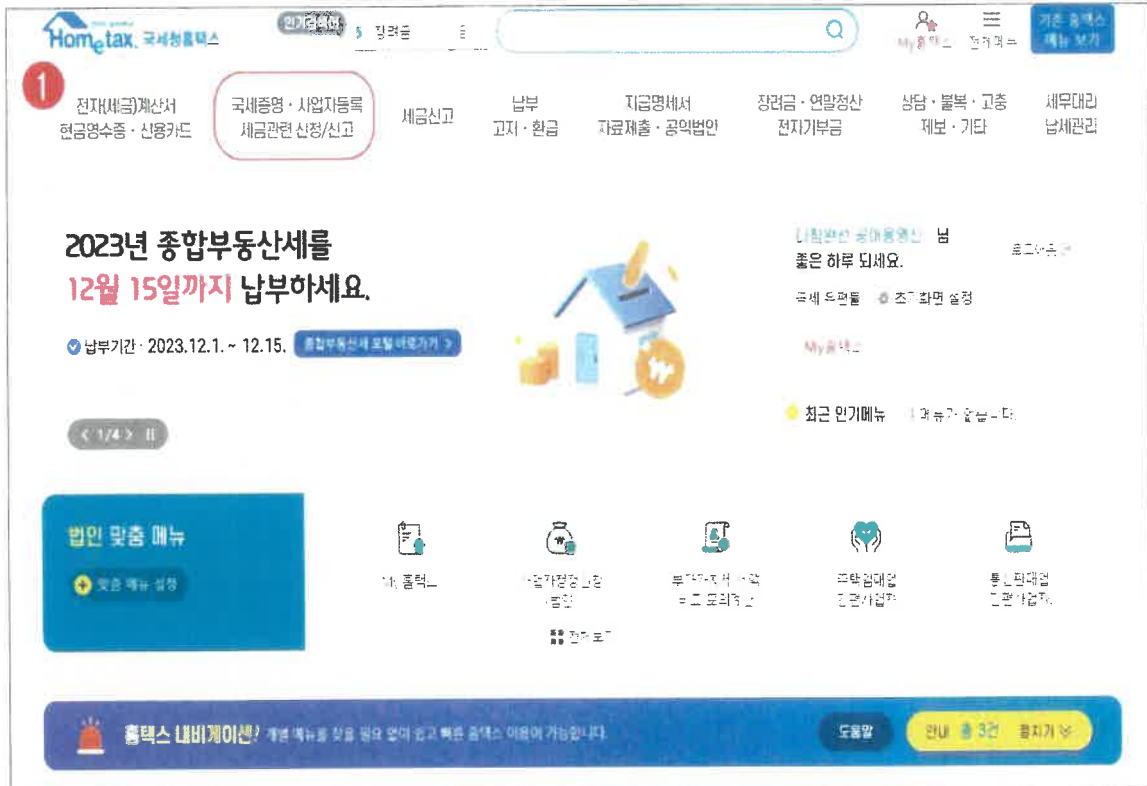
□ 제출 방법

- 홈택스의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> 세금종류별 신청/신고 > 소득·법인세 관련 >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에서 전자신고 하거나,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◆ 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」제도와 관련한 서식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>국세정책/제도>국제조세정보>주요서식>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 전자제출 방법

- ▷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하여,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> 세금종류별 신청/신고 > 소득·법인세 관련 >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에서 작성하여 제출



3

사업장현황 신고

세금종류별 신청/신고

세목을 선택하세요.

부가가치세 관련

소득·법인세 관련

원천세 관련

상속증여세 관련

소비자세 관련

주류면허 관련

종합부동산세 관련

소득·법인세

소득·법인세 관련

소득·법인세 관련

소득·법인세 관련

세목 견제보기 +

관련사이트

국세청홈페이지

국세법령정보시스템

취업후학자금상환서비스

위택스

이택스

국민건강보험

공역신고안내

4

전제비용 계산서

현금영수증

선물카드

국세증명·사업자등록

세금관련 신청/신고

세금신고

납부

고지·환급

지급명세서

자료 제출·공약법인

상여금·연말정산

전자기부금

상담

불복·고충

파보·기타

사무대리

납세관리

주세종별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

소득·법인세 관련 신청/신고

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

역로가기

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

Step 1. 일반신고

Step 2. 최종제출

STEP 01. 일반신고 (신고안내 및 신고서 작성 제출단계입니다.)

해당 신고기간 내 여러 번 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신고된 내용만 정량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고 후 결산등의 결산결과(영장)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결산후 및 신고모작정보는 [STEP 02. 제출내역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

법인세법 제43조의5 규정에 의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

직전연도 연락사무소 현황을 소재지 관할사무소에 신고하는 것

일반신고

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작성하기

신고 전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① (해면 상담) 도구 → 화면상 보기 설정 → 'hometax.go.kr' 주기

② (해면 화면) 동일설치프로그램 → 미설치 프로그램 설치하기